

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

정보통신망법 개정(2019.6.13 시행) 및 관련조항의 개인정보보호법 이관(2020.2.4 신설)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
[관련법률]

-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험가입 의무조항 신설됨

제 39 조의 9(손해배상의 보장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 39 조 및 제 39 조의 2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
- 보험 미가입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[가입대상]

- 정보통신망법상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"
 - ※ 전기통신사업자 및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, **이용자수 1,000명 이상 & 매출액 5,000만원 이상인 경우**
- 의무가입 대상자 유형
 - ☞ 전기통신사업자 : 기간통신사업자, 별정통신사업자, 부가통신사업자
 - ☞ 영리 목적의 정보 제공자/정보 제공 매개자 : 인터넷, 모바일, 전화 등으로 사업 수행하며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회사
 - ☞ 비영리기관이나 단체라도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영위하는 경우,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.

[의무보험]

- 보상하는 손해 : 회사가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, 분실, 도난, 위조,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
- 가입금액 기준 및 보험료 예시 (정보통신업종, 자기부담금 1백만 원 기준, 보험료 50만 원 이상 시 추가할인 가능)

이용자수	매출액	최저 가입금액	보험료 예시
100만명 이상	800억원 초과	10억원	802만 원~
	50억원 초과 ~ 800억원 이하	5억원	314만 원 ~ 561만 원
	5천만 원 이상 ~ 50억원 이하	2억원	138만 원 ~ 181만 원
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	800억원 초과	5억원	347만 원 ~
	50억원 초과 ~ 800억원 이하	2억원	124만 원 ~ 301만 원
	5천만 원 ~ 5억 원 이하	1억원	63만 원 ~ 111만 원
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	800억 원 초과	2억원	74만 원 ~
	50억 원 초과 ~ 800억 원 이하	1억원	41만 원 ~ 143만 원
	5천만 원 이상 ~ 50억원 이하	0.5억원	21만 원 ~ 52만 원

※ 이용자수 : 2019년 10월~12월 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·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수의 평균 (온/오프라인, 회원 여부 무관)

※ 매출액 :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.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예측한 향후 1년 간의 매출액

[가입방법]

- 의무보험 가입을 위한 설문서 작성 → 보험료 안내 (청약서 발급) → 필요서류 제출 및 보험료 납부 → 보험증권 발급
- 의무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 - ☞ LK 보험중개 의무보험 가입데스크 : 02-6913-7211 / <http://www.lkins.co.kr>
- 당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,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설문서를 작성하여 보험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